

#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03. 21.(금)]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 03. 21.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11-72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경기도)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 03. 21.(금)	2025. 03. 31.(월)	2025. 04. 01.(화)	2025. 04. 02.(수)	2025. 04. 08.(화)	2025. 04. 10.(목) ~ 04. 16.(수)	2025. 04. 21.(월) ~ 04. 23.(수)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0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ttecastl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점으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 03. 2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접수	일반공급 1순위 접수 (해당지역 및 기타지역)	일반공급 2순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 03. 31.(월)	2025. 04. 01.(화)	2025. 04. 02.(수)	2025. 04. 08.(화)	2025. 04. 10.(목) ~ 04. 16.(수)	2025. 04. 21.(월) ~ 04. 23.(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건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b> 건본주택</li> <li>-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번지</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국방부(국군복지단)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김포시 내 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추가선택품목(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전매 포함), 추가선택품목에 따른 계약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인지세는 시행위탁자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9216호(2025. 03. 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0-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4층~지상 최고 28층, 9개 동, 총 720세대

[특별공급 358세대(기관추천 72세대, 다자녀가구 72세대, 신혼부부 129세대, 노부모부양 21세대, 생애최초 6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계
2025000076	01	065.9817A	65A	65.9817	23.6244	89.6061	66.8240	156.4301	33.1441	267	27	27	48	24	7	133	134	13
	02	065.8984B	65B	65.8984	24.5103	90.4087	66.7397	157.1484	33.1022	134	13	13	24	12	4	66	68	6
	03	075.8195A	75A	75.8195	26.6170	102.4365	76.7874	179.2239	38.0858	59	6	6	10	5	2	29	30	3
	04	075.9951B	75B	75.9951	27.0396	103.0347	76.9652	179.9999	38.1740	39	4	4	7	3	1	19	20	2
	05	075.9871C	75C	75.9871	26.7689	102.7560	76.9572	179.7132	38.1700	23	2	2	4	2	1	11	12	1
	06	084.7914A	84A	84.7914	29.1893	113.9807	85.8739	199.8546	42.5926	98	10	10	18	9	3	50	48	4
	07	084.9920B	84B	84.9920	29.8371	114.8291	86.0769	200.9060	42.6934	100	10	10	18	9	3	50	50	4
합 계										720	72	72	129	64	21	358	362	33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생활지원센터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065.9817A	065.8984B	075.8195A	075.9951B	075.9871C	084.7914A	084.9920B
건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65A	65B	75A	75B	75C	84A	84B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65A	65B	75A	75B	75C	84A	84B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5	3	2	1	1	2	2	16	
	장기복무 제대군인	4	2	1	1	-	1	1	1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2	1	-	-	1	1	9	
	장애인	경기도	5	2	1	1	1	2	2	14
		서울시	2	1	-	-	-	1	1	5
		인천시	2	1	-	-	-	1	1	5
	중소기업 근로자	5	2	1	1	-	2	2	13	
계	27	13	6	4	2	10	10	7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김포시 및 경기도 (50%)	14	7	3	2	1	5	5	37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50%)	13	6	3	2	1	5	5	35	
신혼부부 특별공급		48	24	10	7	4	18	18	12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7	4	2	1	1	3	3	21	
생애최초 특별공급		24	12	5	3	2	9	9	64	
합 계		133	66	29	19	11	50	50	35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부가가치세 없음)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해당 동·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2025.12.15.	2026.05.15.	2026.10.15.	2027.04.15.	2027.08.17.	2027.12.15.			
65A	132	103동 3,4호 104동 1,2호 106동 3호 108동 2호 109동 3호	1층	1	243,271,920	316,728,080	560,000,000	10,000,000	4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2층	6	248,919,310	324,080,690	573,000,000	10,000,000	4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71,900,000
			3층	7	251,960,210	328,039,790	580,000,000	10,000,000	4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74,000,000
			4층	7	257,607,590	335,392,410	593,000,000	10,000,000	4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177,900,000
			5층	7	263,254,970	342,745,030	606,000,000	10,000,000	5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81,800,000
			6~10층	35	265,861,460	346,138,540	612,000,000	10,000,000	5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11~20층	64	271,508,840	353,491,160	625,000,000	10,000,000	5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21층 이상	5	274,549,740	357,450,260	632,000,000	10,000,000	5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189,600,000		
	135	101동 3,4호 102동 3호 105동 1,2호 107동 3호	2층	3	243,706,340	317,293,660	561,000,000	10,000,000	4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3층	6	246,747,240	321,252,760	568,000,000	10,000,000	4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4층	6	251,960,210	328,039,790	580,000,000	10,000,000	4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74,000,000	
			5층	6	257,607,590	335,392,410	593,000,000	10,000,000	4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59,300,000	177,900,000	
			6~10층	30	260,214,080	338,785,920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11~20층	60	265,861,460	346,138,540	612,000,000	10,000,000	5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61,200,000	183,600,000	
			21층 이상	24	268,902,360	350,097,640	619,000,000	10,000,000	5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65B	62	106동 4호 108동 1호 109동 4호	2층	3	243,271,920	316,728,080	560,000,000	10,000,000	4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56,000,000	168,000,000
			3층	3	246,312,820	320,687,180	567,000,000	10,000,000	4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70,100,000
			4층	3	251,525,790	327,474,210	579,000,000	10,000,000	4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73,700,000
			5층	3	257,173,180	334,826,820	592,000,000	10,000,000	4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59,200,000	177,600,000
			6~10층	15	260,214,080	338,785,920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11~20층	30	265,427,040	345,572,960	611,000,000	10,000,000	5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21층 이상	5	268,467,940	349,532,060	618,000,000	10,000,000	5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185,400,000
	72	101동 5호 102동 4호 107동 4호	1층	2	232,845,980	303,154,020	536,000,000	10,000,000	4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60,800,000
			2층	3	238,493,370	310,506,630	549,000,000	10,000,000	4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54,900,000	164,700,000
			3층	3	241,099,850	313,900,150	555,000,000	10,000,000	4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4층	3	246,312,820	320,687,180	567,000,000	10,000,000	4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56,700,000	170,100,000
			5층	3	251,960,210	328,039,790	580,000,000	10,000,000	4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58,000,000	174,000,000
			6~10층	15	254,566,690	331,433,310	586,000,000	10,000,000	4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58,600,000	175,800,000
			11~20층	30	260,214,080	338,785,920	599,000,000	10,000,000	4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59,900,000	179,700,000
21층 이상	13	262,820,560	342,179,440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75A	42	101동 1호 108동 4호	2층	2	281,934,780	367,065,220	649,000,000	10,000,000	5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194,700,000
			3층	2	285,410,100	371,589,900	657,000,000	10,000,000	5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197,100,000
			4층	2	291,926,310	380,073,690	672,000,000	10,000,000	5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01,600,000
			5층	2	298,008,110	387,991,890	686,000,000	10,000,000	5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05,800,000
			6~10층	10	301,483,420	392,516,580	694,000,000	10,000,000	5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208,200,000
			11~20층	20	307,565,220	400,434,780	708,000,000	10,000,000	6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70,800,000	212,400,000
			21층 이상	4	311,040,530	404,959,470	716,000,000	10,000,000	6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214,800,000
	17	103동 1호	3층	1	279,328,300	363,671,700	643,000,000	10,000,000	5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192,900,000
			4층	1	285,844,510	372,155,490	658,000,000	10,000,000	5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65,800,000	197,400,000
			5층	1	291,926,310	380,073,690	672,000,000	10,000,000	5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67,200,000	201,600,000
			6~10층	5	294,967,210	384,032,790	679,000,000	10,000,000	5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11~20층	9	301,483,420	392,516,580	694,000,000	10,000,000	5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208,200,000
	75B	20	108동 3호	2층	1	274,549,740	357,450,260	632,000,000	10,000,000	5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63,200,000	189,600,000
				3층	1	277,590,640	361,409,360	639,000,000	10,000,000	5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191,700,000
4층				1	283,672,440	369,327,560	653,000,000	10,000,000	5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195,900,000	

			5층	1	290,188,650	377,811,350	668,000,000	10,000,000	5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66,800,000	200,400,000	
			6~10층	5	293,229,550	381,770,450	675,000,000	10,000,000	5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202,500,000
			11~20층	10	299,745,760	390,254,240	690,000,000	10,000,000	5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207,000,000
			21층 이상	1	302,786,660	394,213,340	697,000,000	10,000,000	5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69,700,000	209,100,000
19	103동 2호	1층	1	262,820,560	342,179,440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2층	1	268,902,360	350,097,640	619,000,000	10,000,000	5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85,700,000	
		3층	1	271,943,260	354,056,740	626,000,000	10,000,000	5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62,600,000	187,800,000	
		4층	1	278,025,060	361,974,940	640,000,000	10,000,000	5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192,000,000	
		5층	1	284,106,850	369,893,150	654,000,000	10,000,000	5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65,400,000	196,200,000	
		6~10층	5	287,147,750	373,852,250	661,000,000	10,000,000	5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66,100,000	198,300,000	
		11~20층	9	293,229,550	381,770,450	675,000,000	10,000,000	5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67,500,000	202,500,000	
75C	23	101동 2호	1층	1	267,599,120	348,400,880	616,000,000	10,000,000	5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184,800,000	
			2층	1	273,680,910	356,319,090	630,000,000	10,000,000	5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89,000,000	
			3층	1	276,721,810	360,278,190	637,000,000	10,000,000	5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191,100,000	
			4층	1	283,238,030	368,761,970	652,000,000	10,000,000	5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65,200,000	195,600,000	
			5층	1	289,319,820	376,680,180	666,000,000	10,000,000	5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199,800,000	
			6~10층	5	292,360,720	380,639,280	673,000,000	10,000,000	5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67,300,000	201,900,000	
			11~20층	10	298,876,930	389,123,070	688,000,000	10,000,000	5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68,800,000	206,400,000
			21층 이상	3	301,917,830	393,082,170	695,000,000	10,000,000	5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208,500,000		
84A	45	107동 1호 109동 1호	2층	2	308,868,460	402,131,540	711,000,000	10,000,000	6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71,100,000	213,300,000	
			3층	2	312,343,770	406,656,230	719,000,000	10,000,000	6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71,900,000	215,700,000	
			4층	2	319,294,400	415,705,600	735,000,000	10,000,000	6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220,500,000	
			5층	2	326,245,030	424,754,970	751,000,000	10,000,000	6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75,100,000	225,300,000	
			6~10층	10	329,720,340	429,279,660	759,000,000	10,000,000	6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11~20층	20	337,105,380	438,894,620	776,000,000	10,000,000	6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77,600,000	232,800,000	
			21층 이상	7	340,580,690	443,419,310	784,000,000	10,000,000	6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235,200,000	
	53	102동 1호 106동 1호	2층	1	302,352,250	393,647,750	696,000,000	10,000,000	5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69,600,000	208,800,000	
			3층	2	305,827,560	398,172,440	704,000,000	10,000,000	6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70,400,000	211,200,000	
			4층	2	312,778,190	407,221,810	720,000,000	10,000,000	6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16,000,000	
			5층	2	319,728,810	416,271,190	736,000,000	10,000,000	6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73,600,000	220,800,000	
			6~10층	10	323,204,130	420,795,870	744,000,000	10,000,000	6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74,400,000	223,200,000	
			11~20층	20	329,720,340	429,279,660	759,000,000	10,000,000	6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75,900,000	227,700,000	

			21층 이상	16	333,195,650	433,804,350	767,000,000	10,000,000	6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230,100,000
84B	45	107동 2호 109동 2호	2층	2	301,483,420	392,516,580	694,000,000	10,000,000	5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69,400,000	208,200,000
			3층	2	304,958,730	397,041,270	702,000,000	10,000,000	6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210,600,000
			4층	2	311,909,360	406,090,640	718,000,000	10,000,000	6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215,400,000
			5층	2	318,859,990	415,140,010	734,000,000	10,000,000	6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73,400,000	220,200,000
			6~10층	10	321,900,880	419,099,120	741,000,000	10,000,000	6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22,300,000
			11~20층	20	328,851,510	428,148,490	757,000,000	10,000,000	6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75,700,000	227,100,000
			21층 이상	7	332,326,820	432,673,180	765,000,000	10,000,000	6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76,500,000	229,500,000
	55	102동 2호 106동 2호	1층	1	288,450,990	375,549,010	664,000,000	10,000,000	5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66,400,000	199,200,000
			2층	2	294,967,210	384,032,790	679,000,000	10,000,000	5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67,900,000	203,700,000
			3층	2	298,442,520	388,557,480	687,000,000	10,000,000	5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206,100,000
			4층	2	305,393,150	397,606,850	703,000,000	10,000,000	6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70,300,000	210,900,000
			5층	2	311,909,360	406,090,640	718,000,000	10,000,000	6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71,800,000	215,400,000
			6~10층	10	315,384,670	410,615,330	726,000,000	10,000,000	6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72,600,000	217,800,000
			11~20층	20	321,900,880	419,099,120	741,000,000	10,000,000	6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74,100,000	222,300,000
21층 이상	16	325,376,200	423,623,800	749,000,000	10,000,000	6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74,900,000	224,7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피난구실(실외기실)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지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판매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의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50% 이상 달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됩니다.
- 상기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 대출신청 일정 등 별도 안내)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 부과)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진행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li> <li>※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 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 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 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 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 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 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 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li> </ul>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야 합니다.</li> <li>※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li> <li>※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li> </ul> </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 시·도(김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 수도권(서울·인천 거주자) 50%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김포시) 거주자 우선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li> </ul> </li> <li>■ ②배점                     <table border="1" data-bbox="271 890 2119 1522"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5%;">배점항목</th> <th rowspan="2" style="width: 5%;">총배점</th> <th colspan="2" style="width: 20%;">배점기준</th> <th rowspan="2" style="width: 60%;">비고</th> </tr> <tr> <th style="width: 10%;">기준</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미성년 자녀수(1)</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style="text-align: center;">4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영유아 자녀수(2)</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3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rowspan="3" style="vertical-align: to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세대구성(3)</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3세대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한부모 가족</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무주택기간(4)</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vertical-align: top;">-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td> </tr> </tbody> </table> </li> </ul>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12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김포시</b>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li> <li>-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li> <li>※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b>①소득구분</b></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3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김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 03. 21.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비고

신생아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비고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 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1세대

구분	내용																																																																																	
<b>대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b>무주택세대주</b>(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b>당첨자 선정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b>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li> <li>■ ②<b>가점</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li> <li>- <b>가점 산정기준 표</b>(「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0%;">가점상한</th> <th style="width: 20%;">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20%;">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8">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4">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b>■ ③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b>■</b>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b>■</b>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6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b>■</b>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b>■</b>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b>■</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b>■</b>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b>■</b>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b>■</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b>■</b>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b>■</b>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 03. 21.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증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명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p>

당첨자 선정방법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p><b>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b></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당첨자 선정방법	<p><b>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b></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b>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b></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필요서류				
<b>본인 신청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b>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이전 발급-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

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b>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b></p>	<p>-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p>	
<p><b>공고단지 청약연습</b></p>	<p>-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p><b>당첨자발표 서비스</b></p>	<p><b>청약홈</b></p>	<p>-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b>조회기간</b> : 2025. 04. 08.(화) ~ 2025. 04. 17.(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p>
	<p><b>문자</b></p>	<p>- <b>제공일시</b> : 2025. 04. 0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서류 제출 대상자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p><b>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b></p>	<p>당첨자 전원</p>	<p>2025. 04. 10.(목) ~ 04. 16.(수) (10:00~17:00)</p>	<p>• 풍무동 롯데캐슬 건본주택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번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p>
<p><b>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b></p>	<p>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p>	<p>예비입주자 서류접수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건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및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서류	○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발급용도 : 당첨자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발급기간 : 생년월일~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② 모두 반드시 제출)</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안됨</li> <li>※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li> </ul>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발급기간 : 생년월일~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가점제	○	-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가점 확인(건본주택 비치)</li> </ul>
	-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li> </ul>
	-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 조회</li> </ul>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li> <li>•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li> </ul>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li> <li>•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 제외</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피부양 직계존·비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li> <li>※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 배점 확인(건본주택 비치)</li> </ul>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li> <li>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li> </ul>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신청자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건본주택 비치)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통·금융) 준비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비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신생아(우선/일반) 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가점산정 기준표	본인	• 신청 가점 확인(건본주택 비치)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	주민등록초본(상세)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존속	•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작성(건본주택 비치)
	○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고
	○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표1.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 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 비치)
	-	○	부동산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인증서(공동·금융) 준비 필수 ※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통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해당 시청, 구청, 군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비속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생아(우선/일반) 공급인 경우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통보를 받은자	-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에 관한 공문 또는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주택소유로 보지않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접수 시 필요서류 일체 외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 : 계약자 본인발급용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	-	위임장	당첨자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건본주택 비치
○	-	신분증, 인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3. 21.)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1]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 신고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의 연봉/근로계약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또는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또는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② 재무제표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세무서(또는 홈택스) -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소득금액증명(또는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재직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 ①번 서류 발급 불가 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주민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건본주택 비치 - 세무서(또는 홈택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3. 21.)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당첨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청약신청자 본인)

구분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위촉(해촉) 증명서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중 하나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또는 홈택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3. 21.)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5, 2016, 2018, 2020,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공통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추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토지를 소유한 경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주택 외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 집합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 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 • 집합건물 외 건물 : ①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①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② 주민센터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 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
------------------	-----	--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3. 21.) 이후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특별공급 당첨=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부적격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간 특별공급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됨.
    - 부부외 세대원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 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 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일반공급)	2025. 04. 21.(월) ~ 04. 23.(수), 3일간 (10:00 ~ 16:00)	풍무역 롯데캐슬 건본주택 (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번지)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자격검증서류 일체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건본주택에서 현금 수납 불가)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건본주택 내 비치 ※ 6억원 이상 주택형의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계약 시 의무 작성
	○	-	인지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본인	• 인지세는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대리인 계약 시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외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	위임장	본인	• 건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 03. 2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경남은행	207-0186-3815-06	(주)무궁화신탁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201호" 당첨자 홍길동"→1010201홍길동)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07-0186-3805-00	(주)무궁화신탁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계좌와 상이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일반공급에 한함), 당첨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서류는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로 발생하는 인지세(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해당 금액의 50%)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에게 업무진행 관련(예비입주자 추첨일정 등) 안내와 관련하여, 청약 시 등록한 연락처(전화, 주소 등)를 기준으로 안내드리오니 변동이 있으신 예비입주자께서는 사업주체에게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보 또는 연락받지 못함(부재, 번호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예비입주자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제한되는 비율 만큼은 수분양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공급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자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당월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시행위탁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당월 시행위탁자의 대출이자 대납 실행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당월 대출 대납 실행일전 입주지정일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납부하며,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 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라며 법인은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한도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 또는 시행수탁자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2021.10.21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잔금(90%)	입주지정일
65A	29,800,000	2,980,000		26,820,000	
65B	30,000,000	3,000,000		27,000,000	
75A	34,000,000	3,400,000		30,600,000	
75B	34,000,000	3,400,000		30,600,000	
75C	34,000,000	3,400,000		30,600,000	
84A	38,000,000	3,800,000		34,200,000	
84B	38,000,000	3,800,000		34,2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경남은행	207-0186-3833-08	(주)무궁화신탁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201호" 당첨자 홍길동"→1010201홍길동)
잔금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 확장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 발코니 확장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24.06.18. 개정 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하향식피난구실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일부 무상제공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상제공 품목 중 일부 품목은 적용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무상제공 여부 선택과 무관하게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적용되며 변동되지 않고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이중창(단, 하향식피난구실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루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

- 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일반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납부	입주지정일
65A	[선택1] 기본	2대	안방, 거실	삼성전자	3,900,000	390,000	3,510,000
	[선택2] 전실	4대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5,800,000	580,000	5,220,000
65B	[선택1] 기본	2대	안방, 거실		3,900,000	390,000	3,510,000
	[선택2] 전실	4대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6,000,000	600,000	5,400,000
75A	[선택1] 기본	2대	안방, 거실		4,000,000	400,000	3,600,000
	[선택2] 전실	4대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6,200,000	620,000	5,580,000
75B	[선택1] 기본	2대	안방, 거실		3,900,000	390,000	3,510,000
	[선택2] 전실	4대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6,300,000	630,000	5,670,000
75C	[선택1] 기본	2대	안방, 거실		3,900,000	390,000	3,510,000
	[선택2] 전실	4대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6,300,000	630,000	5,670,000
84A	[선택1] 기본	3대	안방, 거실, 주방		5,300,000	530,000	4,770,000
	[선택2] 전실	5대	안방,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7,100,000	710,000	6,390,000
84B	[선택1] 기본	3대	안방, 거실, 주방		5,300,000	530,000	4,770,000
	[선택2] 전실	5대	안방,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7,100,000	710,000	6,39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프리미엄형)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안)		설치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납부	입주지정일
65A	[선택1] 기본	2대	안방, 거실	삼성전자	4,500,000	450,000	4,050,000
	[선택2] 전실	4대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6,900,000	690,000	6,210,000
65B	[선택1] 기본	2대	안방, 거실		4,500,000	450,000	4,050,000
	[선택2] 전실	4대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7,100,000	710,000	6,390,000
75A	[선택1] 기본	2대	안방, 거실		4,900,000	490,000	4,410,000
	[선택2] 전실	4대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7,600,000	760,000	6,840,000
75B	[선택1] 기본	2대	안방, 거실		4,700,000	470,000	4,230,000
	[선택2] 전실	4대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7,700,000	770,000	6,930,000
75C	[선택1] 기본	2대	안방, 거실		4,700,000	470,000	4,230,000
	[선택2] 전실	4대	안방, 거실, 침실1, 침실2		7,600,000	760,000	6,840,000
84A	[선택1] 기본	3대	안방, 거실, 주방		6,500,000	650,000	5,850,000
	[선택2] 전실	5대	안방,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8,700,000	870,000	7,830,000
84B	[선택1] 기본	3대	안방, 거실, 주방		6,400,000	640,000	5,760,000
	[선택2] 전실	5대	안방,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8,800,000	880,000	7,920,000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미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안방, 거실에만 시공됩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을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세대의 냉매배관 설치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가전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품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납부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전기오븐(후라이팬 서랍 포함) ※ 미선택시 기본 하부장 적용		삼성전자	NQ36A6555CK	400,000	40,000	360,000
	식기세척기 ※ 미선택시 기본 하부장 적용		삼성전자	DW60T7065SS(가구도어형)	850,000	85,000	765,000
			LG전자	DUB22SB(가구도어형)	1,100,000	110,000	990,000
	주방TV (13인치)			STV-1331AT	300,000	30,000	270,000
	욕실 복합 환기 환(욕실 1, 2)		힘펠	FHD3-C150P	1,000,000	100,000	900,000
	빌트인 냉장고 (특화수납장 포함)	4도어 냉장고	삼성전자	RF60C90R2AP	5,300,000	530,000	4,770,000
		3도어 김치냉장고		RQ33C74E1AP			
		4도어 냉장고	LG전자	M622GGB352	5,700,000	570,000	5,130,000
		3도어 김치냉장고		Z332GGB351			
	3구 인덕션		삼성전자	NZ63DB657CAWS(빌트인 디자인 인덕션)	1,300,000	130,000	1,170,000
LG전자			BEI3WWQLBI(빌트인 디자인 인덕션)	1,150,000	115,000	1,035,000	

-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공간은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제품이 제공되는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옵션 선택 시 팬트리장(수납특화 서랍장)이 맞춤 구성 세트에 판매되며, 상품의 조합 및 설치, 모델, 디자인, 색상에 대한 개별선택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장 옵션 미선택 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 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냉장고 선택형 옵션 적용시 미래세대의 경우 4도어 냉장고와 3도어 김치냉장고의 도어간섭으로 인해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구 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도 가스차단기는 설치됩니다.
- 3구 인덕션 옵션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되며, 주방 상판은 옵션과 상관없이 가스 연결구가 타공되고 캡으로 마감됩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가구도어 부착형) 도어는 주방가구와 동일한 가구패널로 마감됩니다.(옵션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 기본 하부 수납장이 적용됨)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 추가 선택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마감재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전타입 (75C제외)	1,700,000	170,000	1,530,000		
		75C	1,800,000	180,000	1,620,000		
거실	거실 벽 스타일업 ①	65A	2,500,000	250,000	2,2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실 아트월에 유럽산 세라믹타일 적용</li> <li>• 거실·복도·주방 시트 판넬</li> <li>※ 거실 벽 스타일업 ① 선택 시 스타일업 ② 선택 불가</li> <li>※ 미선택시 기본제공 거실 아트월 제외 부위 벽지마감</li> </ul>	
		65B	2,800,000	280,000	2,520,000		
		75A	2,500,000	250,000	2,250,000		
		75B	2,750,000	275,000	2,475,000		
		75C	2,800,000	280,000	2,520,000		
		84A	2,750,000	275,000	2,475,000		
		84B	2,900,000	290,000	2,610,000		
	거실 벽 스타일업 ②-1 (침실1,2 통합형 옵션 미선택시)	65A	3,800,000	380,000	3,4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실 아트월·소파 뒷벽·복도 벽 디자인월 적용+히든도어</li> <li>※ 거실 벽 스타일업 ① 선택 시 스타일업 ② 선택 불가</li> <li>※ 미선택시 기본제공 거실 아트월 제외 부위 벽지마감</li> </ul>	
		65B	4,000,000	400,000	3,600,000		
		75A	3,750,000	375,000	3,375,000		
		75B	3,950,000	395,000	3,555,000		
		75C	3,950,000	395,000	3,555,000		
		84A	3,900,000	390,000	3,510,000		
	거실 벽 스타일업 ②-2 (침실1,2 통합형 옵션 선택시)	65A	3,250,000	325,000	2,92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실 아트월·소파 뒷벽·복도 벽 디자인월 적용+히든도어 (침실2 히든도어 제외)</li> <li>※ 거실 벽 스타일업 ① 선택 시 스타일업 ② 선택 불가</li> <li>※ 미선택시 기본제공 거실 아트월 제외 부위 벽지마감</li> </ul>	
		65B	3,400,000	340,000	3,060,000		
		75A	3,200,000	320,000	2,880,000		
		75B	3,400,000	340,000	3,060,000		
		75C	3,400,000	340,000	3,060,000		
		84A	3,350,000	335,000	3,015,000		
	복도	펜트리 시스템 가구	65A	950,000	95,000	855,000	
			65B	730,000	73,000	657,000	
75A			1,050,000	105,000	945,000		
75B			900,000	90,000	810,000		
75C			550,000	55,000	495,000		
84A			1,100,000	110,000	990,000		
84B			960,000	96,000	864,000		
주방	주방 스타일업	65A	2,650,000	265,000	2,38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스톤</li> <li>• 고급 수방수전</li> <li>• 기본제공 행잉 2종 ACC 대신 미드웨이 선반 적용</li> </ul>	
		65B	2,500,000	250,000	2,250,000		

		75A	2,750,000	275,000	2,475,000		
		75B	2,400,000	240,000	2,160,000		
		75C	2,400,000	240,000	2,160,000		
		84A	2,800,000	280,000	2,520,000		
		84B	2,600,000	260,000	2,340,000		
	주방 장식장	65A	4,000,000	400,000	3,6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 장식장 (팬트리 시스템 가구 포함)</li> <li>※ 주방 스타일업 선택시 가능</li> </ul>
		75A	4,600,000	460,000	4,140,000		
		84A	4,900,000	490,000	4,410,000		
	주방 장식장	65B	2,500,000	250,000	2,2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방 장식장</li> <li>※ 주방 스타일업 선택시 가능</li> </ul>
		75B	2,700,000	270,000	2,430,000		
		75C	2,700,000	270,000	2,430,000		
		84B	2,700,000	270,000	2,430,000		
욕실	욕실1 스타일업	65A	3,200,000	320,000	2,8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 벽 타일(600*600 유럽산)</li> <li>• 욕실 젤다이 하부 벽/욕조 에이프런 엔지니어드 스톤</li> <li>• 비데 일체형 양변기,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li> <li>• 고급 세면기 수전 및 욕조수전, 코너선반</li> </ul>	
		65B	3,200,000	320,000	2,880,000		
		75A	3,200,000	320,000	2,880,000		
		75B	3,200,000	320,000	2,880,000		
		75C	3,200,000	320,000	2,880,000		
		84A	3,200,000	320,000	2,880,000		
	욕실2 스타일업	65A	2,850,000	285,000	2,565,000		
		65B	2,850,000	285,000	2,565,000		
		75A	2,850,000	285,000	2,565,000		
		75B	2,850,000	285,000	2,565,000		
		75C	2,850,000	285,000	2,565,000		
		84A	2,850,000	285,000	2,565,000		
침실	안방 대형 불박이장	65A	4,700,000	470,000	4,2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5A, 65B, 75A, 84A : 슬라이딩형(4도어)</li> <li>• 84B : 슬라이딩형(3도어)</li> <li>• 75B, 75C : 여닫이형</li> </ul>	
		65B	5,700,000	570,000	5,130,000		
		75A	5,750,000	575,000	5,175,000		
		75B	3,900,000	390,000	3,510,000		
		75C	3,800,000	380,000	3,420,000		
		84A	6,100,000	610,000	5,490,000		
		84B	4,300,000	430,000	3,870,000		
	안방 대형 드레스룸 ①	65A	1,650,000	165,000	1,48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판넬형 시스템가구(화장대 포함)+가구도어</li> <li>※ 미선택시 일반 시스템가구, 화장대 적용</li> </ul>	
		65B	1,900,000	190,000	1,710,000		
		75A	3,200,000	320,000	2,880,000		

	안방 대형 드레스룸 ②	84A	1,850,000	185,000	1,66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벽판넬형 시스템가구(화장대 포함)+1슬라이딩도어</li> <li>• 시트판넬 안방벽면 마감</li> <li>※ 미선택시 일반 시스템가구, 화장대 적용</li> <li>※ 안방 대형 불박이장과 중복선택 불가</li> </ul>
		75B	4,300,000	430,000	3,870,000	
		75C	4,300,000	430,000	3,870,000	
		84B	4,600,000	460,000	4,140,000	
	침실 1 불박이장(파우더형)	전 타입	1,000,000	100,000	900,000	
	침실 2 불박이장(수납강화형)	65A/B	800,000	80,000	720,000	
		75A/B/C				
	침실 1, 2 통합형	84A, 84B	1,000,000	100,000	900,000	
		65A	1,500,000	150,000	1,3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재(슬라이딩도어)</li> <li>• 복도 팬트리(가구도어+시스템 가구)</li> </ul>
		65B	1,500,000	150,000	1,350,000	
		75A	1,600,000	160,000	1,440,000	
		75B	1,600,000	160,000	1,440,000	
		75C	1,600,000	160,000	1,440,000	
84A		1,750,000	175,000	1,575,000		
84B	1,700,000	170,000	1,530,000			
조명	조명 스타일업	65A	1,700,000	170,000	1,5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li> <li>• 복도·주방 매입등</li> <li>• 거실·안방·침실 고급 직간접등</li> </ul>
		65B	1,700,000	170,000	1,530,000	
		75A	1,700,000	170,000	1,530,000	
		75B	1,800,000	180,000	1,620,000	
		75C	1,800,000	180,000	1,620,000	
		84A	2,100,000	210,000	1,890,000	
		84B	2,200,000	220,000	1,980,000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몰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경남은행	207-0186-3847-06	(주)무궁화신탁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잔금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잔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셔야 합니다.(예 :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시행위탁자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상 문제로 계약체결 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 바라며,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추가 선택품목 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추가 선택 품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시행위탁자 (주)풍무이엔씨가 부담하고 있으며, 시행수탁자인 (주) 무궁화신탁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b>검색대상</b>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b>주택의 범위</b>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b>주택처분 기준일</b>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b>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b>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11 단지 여건 등

### ■ 일반사항

- 본 공고문에 미기재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 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공급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모형, 입주자모집공고문,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홍보영상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및 연출품목 전시용 가구, 가전제품 등을 임의로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이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의 확인 등의 수단을 통하여 그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조감도 상에 표현된 아파트 대지 주변 상황(보도, 횡단보도, 도로, 버스정류장 등)은 향후 관할 관청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향후 관할 관청의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조경식 재계획과 각 동 필로티 출입구, 문주 등이 추가 설치 또는 디자인, 색채, 재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방차 부서공간의 위치는 시공 시 조경 선형 변경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풍하중의 기본설계풍속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로 인한 유입학생 중 초등학생은 김포신평초등학교 및 중학생은 김포시 중학군 내 배정될 예정이나, 교육부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의 학급당 학생 수 정책,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환경 변경, 인근 지역의 타 개발계획 변경 등에 따라 학생배치 방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성(「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이전에 형성된 입주자 모임(카페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101~103동 3층세대 하향식피난구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의거 완강기를 설치합니다.

## ■ 학교 배정

- 당 사업지 학교 배치 예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등학교 : 김포신풍초등학교에 배치 예정(※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중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에 따라 중학생은 김포중학군(김포중, 김포여중, 감정중, 금파중, 풍무중, 양도중) 내 배치 예정이며, 1지마교 정원 초과로 학군 내 상대적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중학교 예정부지(김포시 사우동 산20-11번지 일원)가 신설됨에 따라 중학교 신설 예정임
  - 고등학교 : 김포시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 배정방법은 향후 김포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배정 방법 등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입주 시기 학생 배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및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지 및 주변 부지 현황

- 본 아파트와 관련하여 모형, CG, 카달로그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되어 있는 공동주택 주변의 오피스텔부지, 경관녹지부지, 주차장부지, 어린이공원부지, 도로 등에 대한 계획은 김포시 김포지구 재정비촉진계획 풍무 재정비촉진구역 계획에 기준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들에 대한 계획은 추후 인허가 진행 및 현장 여건, 그리고,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동주택이 준공될 시점에 주변부지에 들어갈 시설물 및 건축물 등은 함께 완료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유의하길 바랍니다.
- 단지 북측으로 김포 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에 접하여 있어, 향후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개발 시 분진,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대형마트(홈플러스 풍무점)가 위치하고 있어 마트 이용객 및 차량들로 인한 빛공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약 500m 내외에 부정미산 및 김포공원(공원묘지), 장릉공단, 김포장례식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김포공항 이착륙 향로에 위치(근접)해 있어 비행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현황(혐오시설위치, 도로, 소음, 일조, 조망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설계관련 주요사항

### ■ [공통]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북측에는 폭 23M ~ 26M 도로, 단지 서측에는 폭 15m 도로, 단지 동측에는 14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의 제53호 어린이 공원이 신설될 계획이며, 도시계획공원으로 인허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에는 제54호 어린이공원이 신설될 예정이며, 도시계획공원으로 인허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제55호 소공원이 신설될 예정이며, 도시계획공원으로 인허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홈플러스 김포풍무점이 위치하여 있으며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통행(차량, 보행)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각 공원들의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 직선거리 약 10km내외에 김포공항이 위치하며,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 운항 패턴 및 운항내용(종류, 횟수)에 따라 예상 소음도가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명,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준공 시 경계(분할)측량 및 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를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면적은 세대별 안분하여 정리되며 일부 소숫점에서 증,감 발생 시 임의로 세대를 지정하여 정산합니다.
- 도로 및 기반시설은 입주 전 공사완료예정이나,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완료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통] 헬스 설치

- 단지 외곽 경계에 헬스가 설치됩니다. 조경계획이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출입구간에는 별도의 외부인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분양홍보물(모형,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통] 구역경계

-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공통] 인허가

- 당 현장은 2023년 9월 최초 사업승인완료(2023년 04월 접수)를 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인증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상품 개선을 위한 설계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계획된 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및 빛공해방지 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습니다.
- 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 [공통] 마감재

-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제공품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모든 타일의 경우 시공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됩니다.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닙니다.

#### ■ [공통]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65A, 84B 타입이 건립되었으며, 계약자의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는 65A, 65B 타입은WHITE(화이트)형으로, 75A, 75B, 75C, 84A, 84B 타입은 BEIGE(베이지)형으로 시공되며 별도의 선택이 불가능 합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합니다.
-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품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유상옵션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_공통사항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 (난간디테일, DA,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문주,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PIT층 및 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빛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은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나 음용할 수 없으며, 물놀이 시설이 아닌 관상용 시설이므로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습니다.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의 배치, 구조, 동 호수별 위치, 주변 건물 등에 따라 저층세대에 일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고 필로티 내 및 인근에 휴게시설, 포켓정원 등 조경시설이 인접하게 설치되어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 아파트 주동 주변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포켓정원, 휴게소, 수경시설, 광장,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소방도로, 산책로, 보행가로변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가마,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당 단지는 확장시 거실에 조망형 이중창 적용으로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및 기반시설의 레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조경석쌓기, 화계,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쌓기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아파트의 현장여건, 미관 개선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디자인, 재질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택배,이삿짐,구급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하 2층 주차장에 택배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천정고를 적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단지 북측의 주출입구 동측에 위치하며, 조업 외 8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실은 근린생활시설 상부, 101동 북동측에 높이 약 3m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8개소로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 인근 지상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와 크기, 세대와의 거리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합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차량 주출입구 및 남동측 부출입구 인근에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인 키즈스테이션이 조성되어 101동, 102동, 108동 저층세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버스 승하차 대기용 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차량동선, 차량대기공간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시와 다르게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상부에는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이며, 출입을 위한 유지관리용 출입문 또는 옥외사다리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 상부 조경토심의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토심에 따라 식재수종도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 상부 조경토심의 일부 변경될수 있습니다.
- 주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수 있습니다.
- 주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 될수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현관 열림과 승강기 호출기능 외에 세대현관 제어 기능은 없습니다.
- 스마트홈 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2,104,106,109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102,104,106,109동 옥상층, 지하1층 헬룸, 지하3층 헬룸(2개소)에 이동통신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장의 여건에 따라 중계기 및 안테나 설

치 위치가 변동 될 수 있으며 , 이로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 MMI Ⅷ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4(g)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 [단지계획]\_단지출입구

- 단지 차량출입구는 북측,남동측에 2개소가 설치되며, 북측의 차량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이용객과 함께 이용하는 출입구로 해당출입구를 통해 진입 시에는 지하2층부터 공동주택 전용 주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남동측의 차량 출입구는 공동주택 전용 출입구로 해당 출입구를 통해 진입시에는 지하3층부터 공동주택 전용 주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회차공간 및 이외 연계된 키즈스테이션은 북측, 남동측 차량출입구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 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_필로티

- 전동 필로티 계획되어 있으며, 필로티 일부공간에 자전거보관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각 동별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됩니다.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장에 단차가 발생 가능합니다.
- 각 동별 동출입구 인근 제연휨틀이 계획되어 있어 저층 일부세대에서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 내부에는 휴게시설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_아파트 주동

- 101동 출입은 GL+23.8 에서 지상 1층으로 출입가능하며, 지하 2~4층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101동 북측에는 23~26m도로, 동측 단차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동측에 단차 하부에 공원 및 14.5M 도로가 계획되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동측에는 준주거용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부지는 추후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신축될 건축물에 의해 추후 조망 및 일조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101동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계단, 실외기실 및 주차장, 휴게시설, 남서측에 광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북동측에는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야간경관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북동측 3,4호라인 측에는 근린생활시설 실외기가 설치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팬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남측에 쓰레기집적소(->공통 수정요청-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변경요청)가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호라인 하부에 D.A 및 경로당,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1동 북서측 단차하부에 주출입구 문주 및 지하주차장 입구가 계획되어 있고 단차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 키즈스테이션, 회차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출입은 GL+18.5 에서 지하 2층으로 출입, GL+23.8 에서 지상 1층으로 출입가능하며. 지하 2~4층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102동 북측에는 23~26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출입구 및 문주, 경비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북동측 단차 하부에 드랍존,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북서측에는 외부계단 및 쓰레기집적소(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수정)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남서측의 어린이놀이터와 남동측의 광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3호라인 북동측 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2동 북서측에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있으며, 저층세대 일부에서 시야간섭,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야간경관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출입은 GL+23.8 에서 지상 1층으로 출입가능하며, 지하 2~4층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103동 북측에는 23m 도로 서측에는 15m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북동측에 외부계단 및 쓰레기집적소(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수정), 탐라이트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서측에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출입은 GL+23.8 에서 지하 1층으로 출입, GL+28.7 에서 지상 1층 출입가능하며, 지하 1~4층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104동 남서측에는 1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중,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남동측에는 외부계단 및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4동 북동측의 어린이놀이터, 북서측에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4동 남동측에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5동 출입은 GL+28.7 에서 지상 1층으로 출입가능하며, 지하 1~3층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105동 남서측 및 북서측에 1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중,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5동 북동측에는 외부계단 및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5동 남동측의 어린이집이 계획되어 있으며, 어린이집 설비시설 등으로 인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5동 북동측에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5동 1호라인 북서측 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 출입은 GL+23.8 에서 지하 1층으로 출입, GL+28.7 에서 지상 1층 출입가능하며, 지하 1~4층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106동 북동측에 광장, 남서측에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 북동, 남동측에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6동 북서측에는 외부계단 및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냄새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6동 북동측에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6동 1호라인 하부에 관리사무소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6동 4호라인 북동측 하부에 D.A가 설치되어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7동 출입은 GL+23.8 에서 지하 1층으로 출입, GL+28.7 에서 지상 1층 출입가능하며, 지하 1~4층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107동 동측의 단차 하부에 소공원 광장 및 14m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7동 동측에는 준주거용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부지는 추후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신축될 건축물에 의해 추후 조망 및 일조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107동 북동측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 북서측에는 광장, 남서측에는 어린이놀이터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7동 남동측에는 주민공동시설로 통하는 계단,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7동 1호라인 하부에 주민운동시설(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4호라인 하부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08동 출입은 GL+28.7 에서 지상 1층으로 출입가능하며, 지하 1~3층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108동 동측 단차 하부에 소공원 및 14m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남동측에 단차 하부에 단지출입구 및 회차공간, 드랍존이 계획되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동측에는 준주거용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부지는 추후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신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신축될 건축물에 의해 추후 조망 및 일조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108동 북동측에 주민공동시설 계단, 북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남서측에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단차 하부에는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용역원실 등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남서측에는 D.A, 쓰레기분리수거장, 탑라이트, 산책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8동 **단지 외부** 남측에는 차량 정비소, 홈플러스 김포풍무점이 위치하고 옥외주차장이 인접하게 위치(2025년 03월 기준)되어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9동 출입구는 GL+28.7 에서 지상 1층으로 출입가능하며, 지하 1~3층 주차장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 109동 남서측에 15m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냄새, 매연, 프라이버시 침해, 차량전조등 등에 의한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9동 남동측 및 남서측에는 쓰레기분리수거장, 남서측에는 외부계단, 북서측에는 어린이집 및 유아놀이터, 북동측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9동 남동측에는 장릉1로로 통하는 계단,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야간경관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 주동 엘리베이터

-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101동(5세대조합)은 3대 102, 103, 106, 107, 108, 109동(4세대 조합)은 2대, 104, 105동(2세대 조합)은 1대 계획되어 있습니다.

#### ■ [단지계획]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

- 101동 북동측에 설치되는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해당계단과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습니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북동측 및 102동 북서측에 설치되는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지상층이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4동 남동측 및 105동 북동측, 106동 북서측에 설치되는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는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지상층이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9동 남서측에 설치되는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고 단지 외부 장릉1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7동 남동측 및 108동 북동측에 외부계단과 엘리베이터가 단차면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되며, 부대복리시설과 지상층이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 [단지계획] 무인택배, 우편물보관함, 세대창고

- 무인택배함은 각 동별 지하2층 주차장 주동출입구 인근에 로비별 1개소 이상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개수,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 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는 지하2층 주동하부PIT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4층까지 4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됩니다.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랜치는 원활한 배수를 위한 시설로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하자가 아닌 사항으로 이에 유의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일부 바닥면 및 벽면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풍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전기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형적 여건으로 단지내 단차가 발생되어 108~109동은 지하1~3층이 바로 연결되고, 101, 102, 103동은 지하2~4층, 104, 106, 107동은 지하1~4층이 연결되도록 계획하였으니 계약 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계획] 부대시설

-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쓰레기보관함은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 부출입구 옆에 계획되어 있어 101동 저층 세대에 소음, 냄새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에 소음 및 냄새,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는 106동 지하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은 101동 하부 지상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106동과 109동 사이 서측에 지상1층 별동으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함께돌봄센터가 107동 지하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에듀존(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은 107동과 108동 사이 하부 지하1층에 설치되고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스포츠존(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샤워/탈의실 등)은 101동과 108동 사이 하부 지하2층에 설치되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이닝카페 및 코인세탁실 등은 107동과 108동 사이 하부 지하3층에 설치되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게스트하우스는 101동과 107동 사이 하부 지하3층에 설치되고 지하주차장과 동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지상층과 연결되는 내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없음을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시설과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내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지하3층 주차장과 지상1층까지 수직 연결되어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이용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팬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차량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키즈스테이션'(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별도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

- 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북측 차량출입구 및 남동측 차량출입구 인근 차량 회차공간에 인접하여 유치원 및 학원 등 통학차량의 승하차 대기공간인 '드랍존'(추후 명칭 변경 가능)이 별도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놀이공간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_공급시설

- 101동, 102동 인근 지하층에 저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에서는 주기전, 점검 및 시험운영시 검은연기, 냄새등으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_문주 및 경비실

- 단지 북측 차량 출입구는 진출입 관리가 가능한 경비실이 설치되고, 문주가 설치됩니다.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 설치로 인하여 외부차량 진입시 차량 대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동측 차량 출입구에는 진출입 관리가 가능한 경비실이 설치되고, 열주, 가벽형태의 부문주가 설치됩니다.
- 문주 계획 및 설치로 인하여 본공사시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문주 및 경비실의 형태, 디자인, 크기 등은 현장여건 및 동선개선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계획]\_국공립 어린이집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등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 ■ [단위세대]\_공통사항

-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벽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5A, 75A, 84A타입 단위세대는 미려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
-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확장세대의 경우 거실은 조망형창호(유리난간일체형)으로 시공되나, 거실을 제외한 나머지 침실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분할형창호로 시공되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 됩니다.
-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주택형별, 타입별로 상이하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무상 선택형 및 유상 옵션은 확장 시 선택 가능하며, 확장 미선택 시 기본 시공 내용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설치시 마감재별 두께차이에 의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단위세대] 제공품목

-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가구공사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현관 신발장,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아일랜드 식탁 포함)
- 가구의 힌지, 레일, 가구조명, 액세서리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창호공사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외부 창호가 설치되지 않으며 분합창이 이중창으로 설치되고, 외부발코니에는 철재난간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중창의 외부 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불가능합니다.

-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1(다용도실)은 외벽 내부면에 단열재가 시공되어 도어에는 단열성능이 없으며, ABS재질로 제작되어 세탁기, 건조기 등 일부 소음이 주방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확장 세대의 경우 거실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난간으로 사다리차의 고정이 어려우며, 다른방의 분합창으로 사다리차로 이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입주전 사전에 이사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전기/설비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 입주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욕실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습니다.
- 발코니1(다용도실)의 물 사용공간 및 세탁기 위치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1(다용도실) 도어 앞 일부에만 난방코일이 설치 됩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실에 설치되며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고,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가 65A/75A/84A타입은 하향식피난구실에 설치되며, 하향식피난구의 개구부에 따라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세대 전열교환기가 65B/75B/75C/84B타입은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75B/75B/84B타입은 덕트가 인접한 하향식피난구실로 관통하며 해당 실 천장에 노출로 설치됩니다.
- 세대 주방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후면 벽면 하부에서 주방 싱크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공CD관이 매립설치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을 연결 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됩니다.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됩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세탁, 손빨래, 발코니) 수전 높이 및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전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사이즈 및 높이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어린이집,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청소소의 위치는 대청세대에 따라 위치가 좌,우 변경될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의 옥조외부 표면상 헤어라인 정도의 기스는 제품 하자가 아니며 제품교체사항이 아닙니다.
-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시 전기, 급·배수, 환기, 소방설비등을 가리거나 철거, 훼손 시에는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누수, 누전, 오작동등 하자발생에 대하여는 시행/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

-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고, 본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매립 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우수, 배수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바닥 타일 줄눈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유상옵션

-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한종류를 포함하여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건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정,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로 우물천정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천정의 중앙에 위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합니다.
- 스타일업(마감재업그레이드)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제공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거실 벽 스타일업②(디자인월+히든도어)과 '침실1,2 통합형' 유상옵션 중복 선택 시, 침실2 히든도어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은 유상옵션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75B, 75C, 84B 안방 대형 드레스룸 유상옵션 선택 시 안방 대형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불가 합니다.
- 주방 장식장 유상옵션은 주방 스타일업 옵션 적용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
- 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장 옵션 미선택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건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가전기기는 전시품목이므로 실 시공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기타] 공통사항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중문 등 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색채심의, 법규변경, 현장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제작물/인쇄물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건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건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해야 합니다.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하천, 자전거 도로, 경관녹지, 완충녹지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하천, 경관녹지, 완충녹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분양상담 관련

-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1. 프리미엄 보장, 추가할인, 계약해제, 연체료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 행위
  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4.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약정 행위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2 기타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28년 07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조경시설, 비상급수시설, 펌프·전기실,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피트니스클럽, GX룸, 남·여 샤워/탈의실, 독서실, 독서실, 라운지 등),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3m / 지하2층 2.7m / 지하3~4층 2.3m	주출입구(지하2층) 2.7m / 부출입구(지하3층) 2.3m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내진 성능등급 표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 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 능력	MMI Ⅷ등급(최대지반가속도 0.204(g))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 무 사 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조명설치(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 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 사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함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함

■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p>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lt;개정 2021. 8. 27.&gt;</p> <p style="text-align: center;"><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명: 김포 풍우(1-1)구역 공동주택 2. 신 정 자: ㈜우공화신학 3. 대 지 위 치: 경기도 김포시 풍우구역 1블럭 1로트 4. 성능 등급</p>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고품질벽체 차단성능</td><td>★</td></tr> <tr><td>2. 중량벽체 차단성능</td><td>★</td></tr> <tr><td>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td><td>★★</td></tr> <tr><td>4. 고층(층도, 바닥)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td><td>★★</td></tr> <tr><td>5. 화장실 급배수 소음</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연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고품질 단열재 사용</td><td>★★</td></tr> <tr><td>2. 단열재의 부착률</td><td>★★</td></tr> <tr><td>3. 단열재의 두께</td><td>★★</td></tr> <tr><td>4. 단열재의 열전도율</td><td>★★</td></tr> <tr><td>5. 단열재의 수분함량</td><td>★★</td></tr> <tr><td>6. 단열재의 내구성</td><td>★★</td></tr> <tr><td>7. 단열재의 내화성</td><td>★★</td></tr> <tr><td>8. 단열재의 내충격성</td><td>★★</td></tr> <tr><td>9. 단열재의 내노후성</td><td>★★</td></tr> <tr><td>10. 단열재의 내오염성</td><td>★★</td></tr> <tr><td>11. 단열재의 내습기성</td><td>★★</td></tr> <tr><td>12. 단열재의 내염화성</td><td>★★</td></tr> <tr><td>13. 단열재의 내산화성</td><td>★★</td></tr> <tr><td>14. 단열재의 내황산화성</td><td>★★</td></tr> <tr><td>15. 단열재의 내황산화성</td><td>★★</td></tr> <tr><td>16. 단열재의 내황산화성</td><td>★★</td></tr> <tr><td>17. 단열재의 내황산화성</td><td>★★</td></tr> <tr><td>18. 단열재의 내황산화성</td><td>★★</td></tr> <tr><td>19. 단열재의 내황산화성</td><td>★★</td></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자판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td><td>★★</td></tr> <tr><td>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건물현장의 환경관리 계획</td><td>★★★★</td></tr> <tr><td>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매뉴얼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0. 공용공간인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 내 알츠하이머</td><td>★</td></tr> <tr><td>13. 홈네트워킹 종합시스템</td><td>★</td></tr> <tr><td>14. 방범안전 콘센트</td><td>★</td></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계단설비</td><td>★</td></tr> <tr><td>3. 계단설비</td><td>★</td></tr> <tr><td>4. 수평피난기구</td><td>★★</td></tr> <tr><td>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p>「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03월 06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고품질벽체 차단성능	★	2. 중량벽체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고층(층도, 바닥)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고품질 단열재 사용	★★	2. 단열재의 부착률	★★	3. 단열재의 두께	★★	4. 단열재의 열전도율	★★	5. 단열재의 수분함량	★★	6. 단열재의 내구성	★★	7. 단열재의 내화성	★★	8. 단열재의 내충격성	★★	9. 단열재의 내노후성	★★	10. 단열재의 내오염성	★★	11. 단열재의 내습기성	★★	12. 단열재의 내염화성	★★	13. 단열재의 내산화성	★★	14.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15.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16.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17.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18.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19.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판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물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인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알츠하이머	★	13. 홈네트워킹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센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단설비	★	3. 계단설비	★	4. 수평피난기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p style="text-align: center;">녹색건축 예비 인증서</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개요]</p> <table border="1"> <tr><td>건축물명</td><td>김포 풍우(1-1)구역 공동주택</td></tr> <tr><td>건축주</td><td>㈜우공화신학</td></tr> <tr><td>주소(계약일)</td><td>경기도 김포시 풍우구역 1블럭 1로트</td></tr> <tr><td>층 수</td><td>지하 4층, 지상 28층 / 720세대</td></tr> <tr><td>면적</td><td>125,073.4666㎡(평가면적: 134,219.0086㎡)</td></tr> <tr><td>건축물의 주요 용도</td><td>공동주택 및 임대주택</td></tr> <tr><td>설계자</td><td>㈜건축사사무소디엔</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인증 개요]</p> <table border="1"> <tr><td>인증번호</td><td>G-SEED-P-2025-0190-T</td></tr> <tr><td>인증기관</td><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tr> <tr><td>유효기간</td><td>2025.3.6. ~ 사용종말일</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인증 등급]</p> <table border="1"> <tr><td>인증등급</td><td>일반등급(공동주택)</td></tr> <tr><td>인증기준</td><td>녹색건축 인증기준</td></tr> <tr><td>국가교류부서</td><td>제2023-129호</td></tr> <tr><td>환경부서</td><td>환경부서 제2023-172호</td></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3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건축물명	김포 풍우(1-1)구역 공동주택	건축주	㈜우공화신학	주소(계약일)	경기도 김포시 풍우구역 1블럭 1로트	층 수	지하 4층, 지상 28층 / 720세대	면적	125,073.4666㎡(평가면적: 134,219.0086㎡)	건축물의 주요 용도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설계자	㈜건축사사무소디엔	인증번호	G-SEED-P-2025-0190-T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5.3.6. ~ 사용종말일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가교류부서	제2023-129호	환경부서	환경부서 제2023-172호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lt;개정 2017.1.20&gt;</p>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table border="1"> <tr><th colspan="2">건축물 개요</th><th colspan="2">인증개요</th></tr> <tr><td>건축물명</td><td>김포 풍우(1-1)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td><td>인증번호</td><td>25-주-제-1-0006</td></tr> <tr><td>승인번호</td><td>20250430</td><td>종가자</td><td>경안학</td></tr> <tr><td>주소</td><td>경기도 김포시 풍우동</td><td>인증기관</td><td>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td></tr> <tr><td>층 수</td><td>지하 4층, 지상 28층(720세대)</td><td>평가기관</td><td>한국에너지공단</td></tr> <tr><td>연면적</td><td>125,073.4666㎡</td><td>유효기간</td><td>사용종말 또는 사용종시 종료일</td></tr> <tr><td>건축물의 주택 용도</td><td>공동주택</td><td></td><td></td></tr> <tr><td>설계자</td><td>(주)건축사사무소 디엔</td><td></td><td></td></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단위연격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요구량</th><th>단위연격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등급</th><th>단위연격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th>비율</th></tr> <tr><td>에너지효율등급 건축설계</td><td>0.0</td><td>0.0</td><td>1</td><td>0.0</td><td>0.0</td></tr> <tr><td>에너지효율등급</td><td>0.0</td><td>86.3</td><td>1</td><td>0.0</td><td>0.0</td></tr> <tr><td>에너지효율등급 건축설계</td><td>0.0</td><td>36.2</td><td>2</td><td>26.6</td><td>7.4</td></tr> <tr><td>에너지효율등급</td><td>0.0</td><td>9.5</td><td>3</td><td>26.0</td><td>4.4</td></tr> <tr><td>에너지효율등급 건축설계</td><td>0.0</td><td>3.3</td><td>4</td><td>9.1</td><td>1.6</td></tr> <tr><td>에너지효율등급</td><td>0.0</td><td>135.5</td><td>5</td><td>139.2</td><td>31.3</td></tr> </table> <p>■ 단위연격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광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연격당 에너지량 ■ 단위연격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광, 환기시스템에서 도는 단위연격당 에너지량 ■ 단위연격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재화, 가열,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연격당 에너지량 ■ 단위연격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연격당 이상불량 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 ) 설치로 [ V ] 냉방( )은 인증받았습니다. ※ 열회수율을 갖춘 건축물은 환기 후회수율을 받아야 하며, 설치된 열회수율에 따라 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연격당 1차 에너지소요량은 등급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5년 02월 17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김포 풍우(1-1)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25-주-제-1-0006	승인번호	20250430	종가자	경안학	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우동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지하 4층, 지상 28층(720세대)	평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25,073.4666㎡	유효기간	사용종말 또는 사용종시 종료일	건축물의 주택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 디엔			단위연격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단위연격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연격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비율	에너지효율등급 건축설계	0.0	0.0	1	0.0	0.0	에너지효율등급	0.0	86.3	1	0.0	0.0	에너지효율등급 건축설계	0.0	36.2	2	26.6	7.4	에너지효율등급	0.0	9.5	3	26.0	4.4	에너지효율등급 건축설계	0.0	3.3	4	9.1	1.6	에너지효율등급	0.0	135.5	5	139.2	31.3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고품질벽체 차단성능	★																																																																																																																																																																																																																	
2. 중량벽체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고층(층도, 바닥)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고품질 단열재 사용	★★																																																																																																																																																																																																																	
2. 단열재의 부착률	★★																																																																																																																																																																																																																	
3. 단열재의 두께	★★																																																																																																																																																																																																																	
4. 단열재의 열전도율	★★																																																																																																																																																																																																																	
5. 단열재의 수분함량	★★																																																																																																																																																																																																																	
6. 단열재의 내구성	★★																																																																																																																																																																																																																	
7. 단열재의 내화성	★★																																																																																																																																																																																																																	
8. 단열재의 내충격성	★★																																																																																																																																																																																																																	
9. 단열재의 내노후성	★★																																																																																																																																																																																																																	
10. 단열재의 내오염성	★★																																																																																																																																																																																																																	
11. 단열재의 내습기성	★★																																																																																																																																																																																																																	
12. 단열재의 내염화성	★★																																																																																																																																																																																																																	
13. 단열재의 내산화성	★★																																																																																																																																																																																																																	
14.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15.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16.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17.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18.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19. 단열재의 내황산화성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판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절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물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인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알츠하이머	★																																																																																																																																																																																																																	
13. 홈네트워킹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센트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단설비	★																																																																																																																																																																																																																	
3. 계단설비	★																																																																																																																																																																																																																	
4. 수평피난기구	★★																																																																																																																																																																																																																	
5. 복도 및 계단 유도설비	★																																																																																																																																																																																																																	
6. 피난설비	★																																																																																																																																																																																																																	
건축물명	김포 풍우(1-1)구역 공동주택																																																																																																																																																																																																																	
건축주	㈜우공화신학																																																																																																																																																																																																																	
주소(계약일)	경기도 김포시 풍우구역 1블럭 1로트																																																																																																																																																																																																																	
층 수	지하 4층, 지상 28층 / 720세대																																																																																																																																																																																																																	
면적	125,073.4666㎡(평가면적: 134,219.0086㎡)																																																																																																																																																																																																																	
건축물의 주요 용도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설계자	㈜건축사사무소디엔																																																																																																																																																																																																																	
인증번호	G-SEED-P-2025-0190-T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5.3.6. ~ 사용종말일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가교류부서	제2023-129호																																																																																																																																																																																																																	
환경부서	환경부서 제2023-172호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김포 풍우(1-1)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25-주-제-1-0006																																																																																																																																																																																																															
승인번호	20250430	종가자	경안학																																																																																																																																																																																																															
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우동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지하 4층, 지상 28층(720세대)	평가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25,073.4666㎡	유효기간	사용종말 또는 사용종시 종료일																																																																																																																																																																																																															
건축물의 주택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건축사사무소 디엔																																																																																																																																																																																																																	
단위연격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요구량	단위연격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연격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비율																																																																																																																																																																																																													
에너지효율등급 건축설계	0.0	0.0	1	0.0	0.0																																																																																																																																																																																																													
에너지효율등급	0.0	86.3	1	0.0	0.0																																																																																																																																																																																																													
에너지효율등급 건축설계	0.0	36.2	2	26.6	7.4																																																																																																																																																																																																													
에너지효율등급	0.0	9.5	3	26.0	4.4																																																																																																																																																																																																													
에너지효율등급 건축설계	0.0	3.3	4	9.1	1.6																																																																																																																																																																																																													
에너지효율등급	0.0	135.5	5	139.2	31.3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5-101-0000500 호	₩331,254,7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웬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

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관리형 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사항은 본 분양광고 여타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건축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풍무이엔씨와 토지를 수탁 받은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 및 시공사 롯데건설(주)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①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내에서 현존하는 신탁재산 (현금)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 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인 (주)풍무이엔씨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②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인 (주)풍무이엔씨와 시행수탁자 (주)무궁화신탁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 (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등 일부해지 및 일부세대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주)풍무이엔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인 (주)풍무이엔씨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③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④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인 (주)풍무이엔씨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⑤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⑥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인 (주)무궁화신탁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유탭엔지니어링	(주)부흥이앤씨	(주)디아이엔지니어링	(주)지케이이엔지
감리금액	₩ 3,177,702,000원	₩ 634,990,551원	₩ 782,707,670원	₩ 302,5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회사명	(주)무궁화신탁	(주)풍무이앤씨	롯데건설(주)
등록번호	110111-2867418	110111-8596623	110111-001476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P&S타워)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185, 15동(풍무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 견본주택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8번지

■ 홈페이지 : <https://www.lottecastle.co.kr>

■ 분양문의 : 1811-72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풍무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